

2018.12.5.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운영·관리방침

- 본 울산항만공사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함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2.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등
3. 관리부서,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5.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9.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■ 제1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
▶ 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 및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운영함

- 항만시설에서의 범죄 예방 및 보안 확보

■ 제2조(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등)

설치 대수	촬영범위 및 촬영방법
133대	울산항 보안구역 일대 (음성녹음 없이 영상만 촬영)

■ 제3조(관리부서,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
▶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둠

구분	부서	이름	직위	연락처
관리책임자	항만보안팀	허영무	항만보안팀장	052-228-4110
접근권한자	항만보안팀	최규석	보안주임	052-228-4111

■ 제4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
촬영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/보관방법
24시간	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	울산항 경비본부/서버저장
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의5서식]의 “영상기록 관리대장”에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함

■ 제5조(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)

▶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수탁업체	담당자	연락처
아이에스엠 (항만운영팀 / 항만보안팀)	김동수	052-228-4191

■ 제6조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함

- 확인 장소 : 운영본부 항만보안팀

■ 제7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음
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

- 열람 등을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

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

- ①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(ex.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)

■ 제8조(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-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함

-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함

- 본 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하여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의4서식]의 “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기록부”를 작성함

■ 제9조(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

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·관리 방침은 2018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함.